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9일, 김남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6.9.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희의원)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예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불송치할 수 있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다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건송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2,000건 중 1,342건(67.1%)이 검찰에 송치되고 626건(31.3%)이 불송치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전 불송치 대상 사건도 검사에게 송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으나 발의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짧아 국회 심사·의결 및 공포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보아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